

포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16.02.19)



포천초등학교

〈포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포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포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칭하고 포천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 (위원정수 및 구성)

-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병설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 교원위원 4명(병설유치원 교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 1. 운영위원의 자격 요건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8조 제2항에 따른다.
- 2.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야 한다.
-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출시기)

- 1.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2.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선출방법)

-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은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일정 관리 및 선거 사무를 총괄한다.
- 가.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 위원은 전 학년도 각 학년 학부모 대표 중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한다. (학년대표가 입후보할 때는 부회장, 총무, 간사 순으로 한다.)
- 나. 교원위원 선출 관리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는 교직원 중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3명을 선출한다.
- 2. 학부모위원 선출

- 가.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나.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다.
- 3. 교원위원 선출
- 가. 당연직인 학교장을 제외한 4명(병설유치원 교원 1명 포함)은 교직원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나. 5위 득표자가 동점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 4. 지역위원 선출
- 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한다.
- 5. 위원이 결원일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례개정 2013.2.27.>
-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3.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동점 일 경우 연장자)
-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례개정 2013.2.27.>
-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다.

제9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 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 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휴학·퇴학 및 전학할 때 단,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4.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5.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본 위원회 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일체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예산범위내에서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이 회의 참석 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차원의 일비를 지급한다.
- 2.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3. 학교 당국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1조 (기능)

- 1.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2.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2조 (심의사항 등)

- 1.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워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2)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5)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2.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3.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4.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5.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법적 조직 및 자생조직에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제시한 의견을 정식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 학부모회
 - 학부모회 산하「학년별,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녹색어머니회, 청소년단 체자모회, 학부모 독서도우미회 등)」

제4장 회의 운영

제13조 (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1. 정기회는 연4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 한다.
- 3.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 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1.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 2.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제15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회의 공개)

- 1.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4.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 1. 회의록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이 포함하여 작성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정성을 저해할 사항,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에 해당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2.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3.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소위원회 설치)

1.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 체육소위원회, 예·결 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례개정 2013.2.27.>

- 2.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재정·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 3.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4.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 5장 학교발전기금

제21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1.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7. 3.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회의시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2005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 일부 개정-2005. 2.)

(2007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선출방법 개정-2007.2.14)

(2009년도 조례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정비-2009.3.6)

제4조 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1908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1.3.18.),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1.11.8.)에 의거 일부(2012-3)개정 제5조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3.4.1] [경기도조례

제4525호, 2013.2.27, 일부개정]에 따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